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. 2. 4 선고 2015가단784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변론 종결2016. 1. 14.

판결 선고2016. 2. 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K 전 392m²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0. 12. 31.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 사실

- 1) 포항시 북구 K 전 392m²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1934. 2. 20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L는 일자 불상경에 이 사건 토지를 M에게 매도하였다.
- 2) M은 1990.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만 원에 매도하였고,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텃밭으로 경작하고 있다
- 3) 한편 L는 1978. 5. 24. 사망하였고,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와 같이 망 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1990.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,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따른 평온·공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,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. 12. 31.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 따라서 망 L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0. 12. 31.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전명환

별지